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용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로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경제적·사회적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대부분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시세 감면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동법 제11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